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자치구 작성자	부서명: 성 명:	전 화: 휴대폰:
시 작성자	부서명:하천관리과 성 명:서태창	전 화:2115-7882 휴대폰:010-3839-7901

사업명 (코드번호)	빗물펌프장 시설능력향상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예산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수자원	정책사업 치수 및 하천관리
---------------	--------------------------------	----	--------------------	-----------	----------------------

사업의 구분

시 사업(), 자치구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신규사업(○), 재심사 사업(), 재상정 사업()
건축비 100억원이상(), 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비 1,000억원이상()

【사전확인사항】

○ 현재진행단계

기본계획 수립중(○), 기본계획 완료(), 기본설계중(),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중(), 실시설계 완료()

○ 사전절차 등 적합성 여부

구분	내용	적합여부	미적합시 의뢰사유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종합결과/완료일자 : 적정/2007.2.12	○	
타당성조사용역완료	※ 방침결정(일자,최종결재자) : 07.5.14/국장 계획명/수립일자 기상이변을대비한수방시설능력향상(펌프장분야)타당성 조사용역지행 / 07.6.22 ~ 07.11.2 결 과 : 30년 강우강도 대비 대부분 빗물펌프장 증설 요함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 2010.11 ~ 2011. 10(예정)	○	
재원확보	시비 (63,79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	

※ 공유재산 심의결과(심의일자) 또는 예정일 : 해당사항 없음

○ 상위계획(마스터플랜)에의 적합성 여부

<상위계획>

- 계획명 : 기상이변을 대비한 수방시설능력 향상(펌프장분야) 타당성 조사
- 근거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부시장 방침
- 계획취지 : 서울의 수방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
- 계획내용 : 2001, 2010년 침수된 지역이 있는 빗물펌프장 우선시행 - 1차 12개소 추진
※ 타당성 조사결과 시급성, 증설공간, 공사기간, 사업추진 가능성 고려 연차 추진

연도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량(개소)	12				용역발주	12				
누계(개소)	12				-	12				
사업비(억원)	63,795				3,324	60,471				

1. 사업계획

가. 사업목적

- 사업취지 : 현재 서울시 빗물펌프장 시설능력은 5~20년 빈도의 강우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근의 기상이변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30년 빈도 수준의 시설능력향상이 시급한 실정임
서울시 빗물펌프장 111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 41개소 빗물펌프장에 대한 시설능력향상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며, 9월23일 시장님 기자회견에서 밝힌 추가 40개소중 12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2010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11년 사업을 완료할수 있도록 투자심사를 요청
- 필요성 : 최근 20~30년동안 서울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불투수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유역이 가지고 있던 자연적인 저류 및 침투능력의 감소로 인하여 침투유출량 및 총유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최근의 엘리뇨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기존의 계획빈도를 초과하는 강우 발생으로 홍수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금번 투자심사대상 12개소는 2010.9.21 집중호우시 침수된 지역에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시설용량 증대가 시급함.
- 기대효과 : 수방시설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12개소 빗물펌프장에 대하여 시설용량 증대로 소중한 시민고객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

나. 사업개요

구 분		금 회
위 치		용산빗물펌프장외 11개 빗물펌프장
기 간		2010.11~2012.12
내 용	전체 규모	용산빗물펌프장외 11개 빗물펌프장 증설 : 4,882 m^3 /min
	세부내용 (증설량)	용산:317 m^3 /min, 삼각지:243 m^3 /min, 송정:512 m^3 /min, 용두:31 m^3 /min, 장안2:253 m^3 /min, 자양:958 m^3 /min, 중동:172 m^3 /min, 방화:394 m^3 /min, 공향:265 m^3 /min 신림:695 m^3 /min, 서초:602 m^3 /min, 방배:440 m^3 /min
사업비 (백만원)	총계	63,795백만원
	재원별	시비 63,795백만원
	회계별	재난관리기금 63,795백만원(3,324백만원은 설계 용역비로 기금 심의 완료)

3.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사항	법적근거	세 부 추 진 내 용	추진기간	비고
지시	수방시설능력 향상추진	· 자연재해대책법 · 시장 지시	· 수해위험지역 안전상태 점검 · 서울의 수방능력 상향 (10년→30년)	2006.7.21	
방침	수방시설 보강계획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 국장방침 - 국지, 돌발적 집중호우에 대비 수방시설 보강	2006.9.29	
심의	건설기술용역 타당성심의	· 지방계약법 · 건설기술관리법	· 펌프장 증설 적정	2007.2.12	
용역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완료	· 지방계약법 · 건설기술관리법	· 전체펌프장(111개소)타당성 조사결과 증설이 필요함	2007.6.22 ~2007.11.2	
방침	수방시설능력 향상4개년 추진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 부시장 방침	· 부시장방침 - 펌프장시설능력향상 필요 및시행(10년→30년빈도)	2007.12.7	
지시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추가 증대	· 2010. 9.23 시장 기자회견 발표	· 빗물펌프장 40개소를 4년 동안 용량증대	2010.11 ~2014.12	
시설용량 증대 (1차)	용역발주	· 지방계약법 · 건설기술관리법	· 2010.11 용역발주 - 대상 : 펌프장 11개소 (공항 : 기 설계)	2010.11 ~2011.10	
시설용량 증대 (1차)	공사 발주	· 지방계약법 · 건설기술관리법	· 2011. 11 공사발주 - 대상 : 펌프장 12개소 · 공사발주 준비중	2011.11 ~2012.12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4. 추진성과 분석 : 해당없음

연차별계획	연 도 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개소)								
	사업비(억원)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추진실적 : 								
사업효과									
문 제 점									
개선방향									

5. 투자심사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사업의 필요성

-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잦은 돌발 집중호우로 저지대 침수우려가 있어 기존 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을 증대하여(30년 빈도) 서울의 수방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시민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의 시급성

- 현재 서울시 빗물펌프장의 시설능력은 30년 강우강도의 비가 내릴 경우 침수 발생의 문제가 있으며, 최근의 기상이변은 거의 매년 재현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비인식이 요구되며
- 이에 따라 저빈도 수준의 우선 대상 빗물펌프장에 대한 향상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자 함

3)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호우의 잦은 발생(기존 빗물펌프장의 계획빈도 초과)

기존펌프장 설계빈도
5 ~ 30년빈도

10년 설계빈도	20년 설계빈도	30년 설계빈도
75mm/hr	87mm/hr	95mm/hr

4) 국내의 최근 200년 빈도 이상의 강우 현황

- 2002.8월 태풍 루사 870.5mm(강릉), 2003.9월 매미 550mm(강원지역), 2007.9월 556mm(제주), 2007.9월 '위파', 10월 '크로사'(대만, 상하이) 2010.9월 21일(200mm, 3시간 연속강우, 서울)

5) 저지대 고밀도 개발로 내수침수 발생시 대규모 피해발생

〈서울시 풍수해 피해현황〉

년도	사망및실종 (명)	이재민 (명)	침수면적 (ha)	피해액 (천원)	비고
1998	19	2,287	453.0	51,441,607	
1999	-	1,823	422.0	10,810,523	
2001	42	338	1.0	24,883,087	
2002	6	111	126.0	8,529,485	
2003	1	1,394	2.6	2,683,979	
2005	1	3	0.2	126,000	
2010	-	223	23,387(동)	42,877,000	
계	70	6,179		141,351,681	

6) 펌프장별 현황 및 증설 필요성

- ① 시설현황 : 대부분의 펌프장이 설계빈도 10년내외의 시설로 30년 강우강도의 비가 내릴 경우 침수발생등의 문제가 있음

(2010. 10. 1 기준)

계	10년 이하	20년	30년 이상
111	79	16	16

- ② 치수 안정성 :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 할 수 있는 수방능력이 부족하여 치수안정에 문제성이 있음

→ 서울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불투수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유역이 가지고 있던 자연적인 저류 및 침투능력 감소로 인한 유출량 증가와 유역면적 변동 및 기존의 계획빈도를 초과하는 강우발생으로, 건설 당시와 비교 펌프장의 시설능력이 부족

- ③ 증설 필요성

→ 여름철 집중호우시 빗물이 대부분 급격하게 저지대 하천으로 흘러들어 빗물 펌프장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 호우시 내수배제를 전담하는 빗물펌프장의 수방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보강의 필요성이 있음

7) 사업의 시급성 분석

구 분	사 유	비 고
일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이변에 의한 침수피해는 거의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액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침수발생시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소송예상 · 최근의 기상이변은 거의 매년 재현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비인식이 요구됨. 이에 따라 저빈도 수준의 우선대상에 대한 향상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타당성조사 결과 용량부족 대상에 대한 시설 확충사업이 필요함 	

8) 자체종합평가

- 집중호우에 따른 시민고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수배제 시설물(빗물펌프장)의 시설능력 향상사업이 시급히 필요함. 특히 금번 투자 심사대상(12개소)은 2010. 9. 21 집중호우시 침수지역내에 있는 펌프장으로 빠른 시일 내 사업추진이 필요함

나.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1) 사업추진의 적법성

사업추진 근거법규	관련조항 및 주요골자	적합여부 (○,×)
자연재해대책법	· 제3조제1항 국가는 기본법 및 이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과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지시 및 방침	· 시장 기자회견 발표(2010.9.23) · 사업 방침서 수립중	○

2) 사전절차 이행여부

사 전 절 차	주 요 내 용	적합여부 (○,×,△)	미적합시 의뢰사유
건설기술용역 타당성심의	○심의일자 : 2007.2.12 ○종합결과 : 적정	○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기간 : 2007. 6. 22~2007. 11. 2 ○용역비 : 114백만원 ○종합결과 : 타당	○	

3)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구 분	계 획 명	수립일자	수립주체	반영여부 (○,×,△)	반영내용
상위계획	수방시설능력 향상 추진	2006.7	서울시	○	· 부시장 지시
	수방시설 보강계획 수립	2006.9	서울시	○	· 국장방침
	기상이변을 대비한 수방시설 능력향상(펌프장분야) 타당성조사용역	2007.11	서울시	○	· 58개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
	수방시설능력향상 4개년 추진계획	2007.12	서울시	○	· 부시장 방침

4)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 : 해당없음

5) 자체종합평가

- 적법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에 있어 모두 적합함

다.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1) 사업규모의 적정성

구 분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현재시설	30년 강우강도 시 필요시설	계획(증설)시설	
펌프용량 (m^3/min)	10,308(m^3/min)	15,190(m^3/min)	4,882(m^3/min)	적정

※ 관련 산출물량 별첨

2) 사업비의 적정성

① 단위당비용

구 분	빗물펌프장 시설능력향상사업	비 교 기 준		적 정 여 부 (적정, 과다, 부족)
		수방시설능력향상을 위한 빗물펌프장시설능력증대공사 (2차)사업비		
사업 규모	4,882 m^3/min 증설	12,675 m^3/min 증설		
총 사업비	계	63,795백만원	165,100백만원	-
	공사비	58,043백만원	152,400백만원	-
	보상비	-	-	-
	용역비 등	5,752백만원	12,700백만원	-
단위당비용	공사비	1,189만원/ m^3/min	1,302만원/ m^3/min	적정
	보상비	/ m^3/min	/ m^3/min	
	용역비 등	117만원/ m^3/min	100만원/ m^3/min	적정

※ 용역비(감리비)는 엔지니어링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변경

② 재원구성

구 분	국 비		시 비		자치구비		재정지원 근거·비율	재원배분 적정여부 (적정, 부적정)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비용내역	백만원	%	63,795백만원	100%	백만원	%	재난기금 (63,795)	적정
비용용도	공사비	보상비	용역 등	공사비	용역 등	공사비		
				58,043	5,752			

3) 자체종합평가

- 규모(펌프용량), 단위당비용(공사비, 용역비), 재원구성 등에 있어,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모두 적정함

라.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1) 재무적 수익성 : 수입은 없으며 지출 미발생(기존 펌프장 유지관리에 포함)

2) 경제적 타당성

▶ 경제적 타당성은 수방시설물의 특성상 시민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보장성격이 크므로 단순히 투자비용대 편익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나, 침수발생시 많은 가구가 침수됨에 따라 상당한 재산손실 및 피해가 발생되어, 사전에 펌프장을 증설하여 침수를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지난 7개년간의 실질적 피해액에 대한 편익과 투자비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① 경제적 편익 : 20,193백만원

- 7개년(1998~2010년 중) 침수피해액 평균 :

(51,442+10,811+24,883+8,529+2,684+126+42,877)백만원/7=20,193백만원/년

② 경제적 비용 : 63,795백만원

- 년차별 투자비 :

(단위:백만원)

년차	2010년	2011년	비고
투자비	3,324(기금)	60,471	

③ 비용편익 분석표(할인기간 : 사업 완료 후 20년까지)

- 비용편익분석표

(단위 : 백만원)

할인년차		편익	비용	할인계수 (4.5%)	편익현재가 (A)	비용현재가 (B)	순현재가치 (A-B)
년차	년도						
0	2010	0	3,324	1.0000	0	3,324	-3,324
1	2011	0	60,471	0.9569	0	57,865	-57,865
2	2012	20193	0	0.9157	18,491	0	18,491
3	2013	20193	0	0.8763	17,695	0	17,695
4	2014	20193	0	0.8386	16,934	0	16,934
5	2015	20193	0	0.8025	16,205	0	16,205
6	2016	20193	0	0.7679	15,506	0	15,506
7	2017	20193	0	0.7348	14,838	0	14,838
8	2018	20193	0	0.7032	14,200	0	14,200
9	2019	20193	0	0.6729	13,588	0	13,588
10	2020	20193	0	0.6439	13,002	0	13,002
11	2021	20193	0	0.6162	12,443	0	12,443
12	2022	20193	0	0.5897	11,908	0	11,908
13	2023	20193	0	0.5643	11,395	0	11,395
14	2024	20193	0	0.5400	10,904	0	10,904
15	2025	20193	0	0.5167	10,434	0	10,434
16	2026	20193	0	0.4945	9,985	0	9,985
17	2027	20193	0	0.4732	9,555	0	9,555
18	2028	20193	0	0.4528	9,143	0	9,143
19	2029	20193	0	0.4333	8,750	0	8,749
20	2030	20193	0	0.4146	8,372	0	8,372
21	2031	20193	0	0.3968	8,012	0	8,012
		403,860	63,795	계	251,360	61,189	190,170

④ 경제적 타당성 평가

○ 분석결과

- 순현재가치(NPV) : 순현재가치(NPV) : 190,170 > 0

- 비용편익비(B/C Ratio) : 비용편익비(B/C Ratio) : 251,360 ÷ 190,170 > 1

○ 자체평가 :

- 본 사업은 도시의 존립기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민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성격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 사료됨.

마. 지역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1) 지역간 균형성

- 사업수혜지역 :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금회 증설대상 펌프장의 유역 면적은 총 836.3ha임

2) 시설입지의 타당성

- 시설입지는 서울시 전역의 우수지가 있는 펌프장에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지역적 편중 없음

바.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1) 정치적 가능성

- 집중호우에 따른 시민고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치적 제약은 없음

2) 법적·행정적 가능성 :

-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장여건, 토지보상, 도시계획시설결정, 민원 등의 법적·행정적 제약 없음

3) 재원조달 가능성(재원조달부서와의 협의내용) : 재난관리기금 조달가능

4) 기타 사업추진 제약요인 : 해당사항 없음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가. 조직 및 예산

1) 조직도

-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 자치구 치수담당 부서

2)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나. 세부시설 운영계획

1) 운영방식 : 자치구 관리

7. 자치구청장 사업추진의견서

- 해당없음

8. 실, 국, 본부장 사업추진의견서

□ 사업명 :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

□ 종합의견

- 서울시는 최근 20~30년 동안 팽창, 밀집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초지, 나대지 등이 포장되어 불투수층의 확대로 여름철 집중호우시 유출율이 증가한 상태로 대부분 급격하게 저지대 하천으로 흘러들어 빗물펌프장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임.
- 2001년에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의 개선책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5,400억원을 들여 빗물펌프장 51개소를 신, 증설하였으며, 또한 수방 시설능력 향상 4개년 계획에 의거 2008년 ~ 2011년 까지 약 3,596억원을 투자하여 41개소 펌프장의 시설용량을 증대시키고 있음에도, 2010년 9월 21일 서울지역에 200년빈도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지역의 침수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기 이에대한 개선안으로 금번 침수지역및 시설용량이 작은 40개소 빗물펌프장을 추가적으로 시설용량 증대코자 함.
- 금회 투자심사대상 12개소는 금번 침수된 지역내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시설용량 증대가 시급하게 요하는 곳으로 펌프장 시설용량증대를 통해 사람, 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물 정책으로 맑고 깨끗한 도시를 이루고자 함.

2010. 10.

물관리 기획관 송 경 섭 (서명)



9. 위치도면 및 현장 사진



10. 투·융자사업 투자우선순위표 (동종사업간)

실·국·본부명 : 도시안전본부

항목별 \ 사업별	A 사업	B 사업	C 사업	...
투자우선순위	1			
총 계	88.5			
1.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17			
2.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8.5			
3.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8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25			
5.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20			
6. 사업추진의 제약요인 및 자원조달 가능성	10			

1. 동종사업 : 투자심사분석지침의 “예산분류체계 중 기능별분류”가 같은 사업으로 함.
2. 산출방법 : 『사업별 평가점수산정표』(첨부)에 의거 산출된 점수 기재 (총100점 만점)

【사업별 평가점수 산정표】

○ 사업명 :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총계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항목	배점	항목	배점	항목	배점		
1.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20	필요성	13	아주 절실하다	12~13	17	
				필요하다	10~11		
				어느정도 필요하다	8~9		
		시급성	7	아주 시급하다	6~7		
				시급하다	3~5		
				시급하지 않다	0~2		
2.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10	적법성	6	근거법규 있다	3	8.5	
				사업방침 있다	3		
		계획성	4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다	1		
				상위기본계획에 반영됐다	2.5		
				성과계획에 반영됐다	0.5		
3.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10	규모	5	아주 적정하다	4~5	8	
				적정한 편이다	2~3		
		비용	5	아주 적정하다	4~5		
				적정한 편이다	2~3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30	재무적 수익성	10	긍정적이다	6~10	25	88.5
				부정적이다	0~5		
		경제적 타당성	20	긍정적이다	13~20		
				보통이다	6~12		
				부정적이다	0~5		
5.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20	지역간 균형	10	지역간 균형을 개선한다	6~10	20	
				지역간 균형개선과 무관하다	0~5		
		입지 타당성	10	아주 적정하다	6~10		
				적정한 편이다	0~5		
6. 사업추진의 제약 요인 및 자원조달 가능성 (모든 가능성이 있을 때만 10점반영 하고 그외 0점 반영)	10	① 정치적 가능성	각종 민원해결가능성은	있다	없다	10	
		② 법적·행정적 가능성	법적·행정적 절차를 이행했거나 사후 이행가능성은	있다	없다		
		③ 자원조달 가능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조달은 가능성은	있다	없다		
		④ 기타 제약 요인	기타 제약요인을 극복할 가능성은	있다	없다		

※ 1~5번까지 점수가 양호하더라도 6번에서 10점을 얻지 못하면 사업추진불가

11.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 (민자가 포함된 경우) : 해당없음

〈법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25)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20)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15)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10) 			
자 본 금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25)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20)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15) ○ 당해투자금액 미만 (10) 			
투자실적(국내·외) ※ 1회 투자금액 중 가장 큰 규모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25)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20)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15)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10) ○ 투자실적 없음 (5) 			
불량거래자 등록 여부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25)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0) 			

- 1)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

〈개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 (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70)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65)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60)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55)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50) ○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45) 			
불량거래자 등록 여부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30)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0) 			

- 1) 관공서 발급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